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교육지원과)

의안번호	제 80 호
제 출 자	이호건 의원 외 10명 (2022. 11. 10.)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지능지수가(IQ 71~84) 사이로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으로 인해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해 교육이나 복지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라.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안 제6조~제7조)

마. 유관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 공동사업 추진(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나. 협조부서 : 교육지원과

다.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라. 입법예고 : 2022. 11. 10. ~ 2022. 11. 15.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1)에 따라 우리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학습부진아)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 되었음.
- 느린학습자란 지능지수(IQ) 70~85 수준으로 평균 지능지수보다 낮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가 느린 학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느린학습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만큼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양쪽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 으며, 경계선 아동의 대부분이 어휘력과 언어 표현력이 다소 부족하 고 상황을 파악하는 눈치가 결핍된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사회적 기술이 전반적으로 떨어지지만, 여러 연구에서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대체로 크게 나타남.
-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자립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이 필요하 나 현재 느린학습자의 지원을 위한 법령 및 기초 통계자료 등이 없는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상태이며, 느린학습자 교육을 위해 2016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2020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경제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시행 중에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 : “느린학습자”와 “느린학습자 지원”에 대해 정의하였으나, 현행 법령에는 이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음. 본 조례안에서는 “느린학습자”에 대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느린학습자 지원”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 ~ 제8조(지도·감독)** :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센터의 위탁,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공동사업 추진)** :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지원사업) :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례를 살펴보면, 광역단체 4곳(경기, 강원, 서울, 광주광역시)과 기초단체 12곳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직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 본 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학교 안과 밖에서 느린학습자를 위한 성공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느린학습자(학습부진아, 경계선지능인)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됨.